

1. 개정이유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밑에 총액인건비제 특례로 운영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디지털 기반 농업연구 성과확산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안전·보건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1명)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8명(9급 8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중 “분석 및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발전 전략 수립”을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연구개발의 어젠다 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을 각각 “연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발전전략 수립

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기술지원과 및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을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로, “농촌지도관으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을 “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은 제외한다)”을 각각 “유용미생물”로 한다.

제38조제4항 후단 중 “8명을”을 “9명을”로 한다.

별표 2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7”을 “46”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7”을 “16”으로 하며,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식품위행서기보 8”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보“2”를 “3”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6”을 “5”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2”를 “3”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6”을 “5”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단서로 인력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부분과 별표 3의 개정규정(9급 8명의 직렬조정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각각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정책국) ①·② (생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어젠다(Agenda) 개선</u>	5. <u>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발전전략 수립</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11의2. <u>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발전 전략 수립</u>	11의2. ----- <u>분석</u>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④ 연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삭 제	
2. <u>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어젠다 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어젠다사업”이라 한다)</u> 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운영 총괄	2. ----- <u>연구개발사업</u> ----- ----- ----- ----- -----
3. <u>연구개발 어젠다사업</u> 과제의 공모	3. <u>연구개발사업</u> ----- --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연구개발 어젠다사업</u> 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의 총괄	6. <u>연구개발사업</u> -----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u>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⑤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연구개발 어젠다사업</u> 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u>연구개발사업</u>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 농업과학원에 <u>기획조정과·운 영지원과·기술지원과 및 환경 개선미생물연구단</u> 을 두되, 기획 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 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환경개선 미생물연구단장은 <u>농업연구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u> 으로 보한다.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 <u>기획조정과·운영 지원과 및 기술지원과</u> 를 ---- ----- ----- ----- ----- ---- <u>농촌지도관</u> ----- ----- ----- -----.

② ~ ④ (생 략)

⑤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잔류농약 및 폐플라스틱 분
해 미생물(이하 “환경정화 미
생물”이라 한다)의 탐색, 선발
2. 환경정화 미생물의 기능 활
용에 관한 연구
3. 환경정화 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
한 연구
4. 환경정화 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3조(농업생물부) ① ~ ⑤ (생 략)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
은 제외한다)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생 략)
4.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
은 제외한다)을 이용한 고부
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농업생물부)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유용미생물 -----

3. (현행과 같음)
4. 유용미생물-----

5.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
은 제외한다)의 산업화에 관
한 연구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
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5. 유용미생물-----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9명을-----

-----.

⑤ · ⑥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3의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
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
촌지도사 정원 중 2명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개
선미생물연구단은 2022년 5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9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9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
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5의 농업연구사 2명
으로 보며, 별표 5의 농업연구
관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5의 농업연구사 2명으로 분
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
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농업연구관 1명은 2020년 1
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7의 농업연구사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삭 제>

<u>1명으로 본다.</u>	
-----------------	--

신·구정원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u>	<u><신 설></u>	<u>8</u>	+8
<u>또는 식품위생서기보</u>			
<u>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8</u>	<u><삭 제></u>	-8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	· · <u>2</u> · ·	· · <u>3</u> · ·	+1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7</u>	<u>46</u>	-1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1</u> · ·	<u>2</u> ·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7</u>	<u>16</u>	-1
·	·	·	
·	·	·	
<u>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u> 또는 <u>식품위행서기보</u>	<u><신 설></u>	<u>8</u>	+8
<u>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8</u>	<u><삭 제></u>	-8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공업서기보	.		.		.	+1	
	.		.		.		
			<u>2</u>		<u>3</u>		
	.		.		.		
기계운영서기보	.		.		.	-1	
			<u>6</u>		<u>5</u>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공업서기보	.		.		.	+1	
	.		.		.		
			<u>2</u>		<u>3</u>		
	.		.		.		
기계운영서기보	.		.		.	-1	
			<u>6</u>		<u>5</u>		
	.		.		.		